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2022. 11.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신설(안 제5조)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신설

나.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6조)

○ 국 명칭 변경 : 복지문화국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 과 변경 사항

- 과 명칭 변경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신설

- 부서 이관 : 교육지원과 → 복지교육국 / 문화체육과 → 행정문화국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복지정책과 : 1인 가구 지원 추가

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7조)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과 변경 사항
 - 도시재생과 폐지

라.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9조)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 과 변경 사항
 - 주민공동체과 폐지
 - 과 명칭 변경 :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마. 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안 제10조)

-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 과 변경 사항
 - 과 명칭 변경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지역경제과 신설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도시안전과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추가

바. 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안 제11조)

- 국 명칭 변경 : 행정국 → 행정문화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과 변경 사항
 - 부서 이관 : 교육지원과 → 복지교육국 / 문화체육과 → 행정문화국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자치행정과 : 마을만들기 및 마을미디어 운영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시·군·구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비용추계 등 자료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 : 2022. 11. 4. ~ 2022. 11. 7.

- 3) 입법예고 결과 : 부서 제출의견 3건

부서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반영결과
교통 지도과	○ 제8조 제2항 제2호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및 주차장 운영관리, 승용차 요일제 추진 및 평가,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운수과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2항 제2호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운수과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징수,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평가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2020.1.9.)에 따라 사무분장 삭제 팀 업무분장에 따라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사무분장 분리 수정	반영

부서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반영결과
일자리 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제2항 제3호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 기획,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공공 근로사업 등), 고용 정보·훈련에 관한 사항, 창조산업지원·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에 관한 업무 ○ 제10조 제2항 제4호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의 경영·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관리, 동물보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제2항 제3호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 기획,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안심 일자리사업 등), 고용 정보·훈련에 관한 사항,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 발굴·지원에 관한 업무 ○ 제10조 제2항 제4호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통시장의 경영 현 대화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육성 및 골 목형 삼점가 활성화 업무,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업무 	<p>2021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분장 수정 4차 산업 육성·지원 및 사업 다변화에 따라 사무분장 수정 청년지원 사업 명확 화를 위한 사무분장 구체화하여 수정</p> <p>지역 경제팀이 소상공 인지원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중점적인 사업이 되는 업무로 사무분장 수정</p> <p>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 의미를 함축할수 있게 기준의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로 두고, 추가된 중점사업에 대해 사무분장에 추가</p>	일부 반영

부서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반영결과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제2항 제2호 동행정 평가 및 관리 업무, 현장행정, 사회 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자치 회관 운영, 민·관 협치 업무, 주민참여 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제2항 제2호 동행정 평가 및 관리 업무, 현장행정, 사회 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민·관 협치업무, 주민참여 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p>「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2020년 전동 확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사무 분장 수정</p>	반영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 단장 ·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 · 단장 ·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 단 · 과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을 둔다.

제4조(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한시기구) 부구청장 밑에 한시기구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 보건복지 플래너 운영,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50⁺정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여성복지 및 보호,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지원,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온종일 돌봄에 관한 사항
6. 교육지원, 친환경무상급식, 평생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

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관련사항,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사무소 지도·감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한옥보전 및 진홍정책, 공공 및 민간시설 디자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관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지도단속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대한 사항
5. 하수·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재난예방·수습·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관리,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①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 공무관, 화장실 청소·장비 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 사업 등), 고용정보·훈련에 관한 사항,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 발굴·지원에 관한 업무
4.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

조합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업무,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업무

5.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업무, 에너지 수급 조절 및 공급, 환경교육 전반,
소음·분진·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구 청사관리, 의전·행사, 인사, 조직, 직원교육, 공무원단체, 직원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현장행정,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민·관 협치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문화재,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성북소리·구보 발간,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 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7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 · 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 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은, 해당부서에 소관업무를 삭제 ·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신설 · 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김종환